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05다70540(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05다70557(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

대표이사 박○○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장석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1. 조○○

2. 조○○

3. 조○○

피고(반소원고)들 주소 대전 서구 ○○

피고(반소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전제일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심재필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05. 11. 2. 선고 2005나7939(본소), 2005나7984

(판소) 판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보험계약의 보통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서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923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이○○가 2004. 7. 21. 20:57경 대전 서구 ○○라인의 15층과 옥상 사이에 있는 비상계단 창문 아래로 떨어져 두개골 개방성 분쇄골절 및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현장에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는 한편,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래 명랑한 성격이던 이○○는 2003년경 남편이 실직한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직접 독서실을 운영하거나 피아노학원에서 강사로 일하였으나, 경기침체로 독서실운영이 어렵게 되자 독서실운영자금으로 사용한 부채에 시달리는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던 사실, 이로 인하여 이○○는 불안, 불면증을

동반한 정도의 우울장애, 기분부전증(氣分不全症) 등을 앓게 되어 2003. 10. 21.부터 2004. 4. 3.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간헐적으로 ○○ 신경정신과의원 및 ○○ 정신과의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하였고, 사망할 때까지 주위 사람들에게 자주 ‘죽고 싶다’는 등의 말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그렇다면 비록 이○○의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의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은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가 투신자 살하였고 이는 일단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에서 면책사유로 정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1점의 주장과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에 의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에서 위 면책사유의 예외가 되는 사유로 정한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도 이러한 의미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등 참조). 또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性行),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라 함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이든 그렇지 않은 경우이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원심 인정 사실이나 기록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이○○의 당시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 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가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이 대체로 같은 이유를 들어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판단도 정당하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제2점의 주장과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에 의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재윤 \_\_\_\_\_

대법관 이규홍 \_\_\_\_\_

대법관 김영란 \_\_\_\_\_

주 심 대법관 김황식 \_\_\_\_\_